

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(제1차 교육위원회) 2021. 4. 23.(금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수 석 전 문 위 원

충청북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

검토보고서

1. 발 의 자: 김국기 의원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O 발의일자: 2021년 4월 13일

O 회부일자: 2021년 4월 16일

3. 제안이유

○ 「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충청북도 내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전통문화 유산인 효의식 함양과 효행 장려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효행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O 교육감 등의 책무(안 제3조)
- O 효행교육 시행계획 수립(안 제4조)
- O 효행교육 실시(안 제5조)
- 효행교육 사업(안 제6조)
- O 홍보(안 제7조)
- O 표창(안 제8조)
- O 협력체계 구축(안 제9조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학생들에게 효의식 함양과 효행 장려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효행교육을 진흥시켜나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-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효행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효행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안 제6조에서는 학교장이 효행교육 진흥을 위해 효행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효행 관련 봉사와 동아리 활동 활성화, 효행의 날이나 달 운영 등과 같은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효행교육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와 효행 장려 및 효행문화 확산을 위해 효행교육 우수사례와 관련자료 등에 대해 홍보하도록 하고, 효행이 우수한 학생 및 효행교육진흥에 공로가 큰 학교나 교사에 대해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- O 안 제9조에는 효행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O 현재 우리사회는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공동체의식 약화와 효 의식 상실, 심화되고 있는 세대 갈등 및 노인 학대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임.
-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, 본 조례 제정은 충청북도교육 청의 효행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문화함으로써, 학생들의 경로효친 의식 함양과 실천을 장려하고 지역사회 효문화 확산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으로,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.